

홀로그램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에서는 홀로그램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홀로그램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우수한 홀로그램콘텐츠 발굴 및 제작비용 지원으로 홀로그램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04.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홀로그램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10월 31일

□ 지원대상 : 중소기업(문화콘텐츠 기업, 홀로그램 관련 기업)

-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 문화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콘텐츠를 자체 (직접)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
- 홀로그램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 지원내용 : **홀로그램콘텐츠 제작 비용(품목지정형)**

No	지원분야	내용
1	디지털홀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분야” 기술을 활용한 신규 홀로그램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지원분야” 5개 중 택1(중복신청 불가) • 단독(주관) 또는 컨소시엄 • 공익적 활용 및 전시회 개최시 참여 협조 •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 가능
2	Head-up-Display	
3	유사홀로그램	
4	혼합현실(MR)	
5	플렌옵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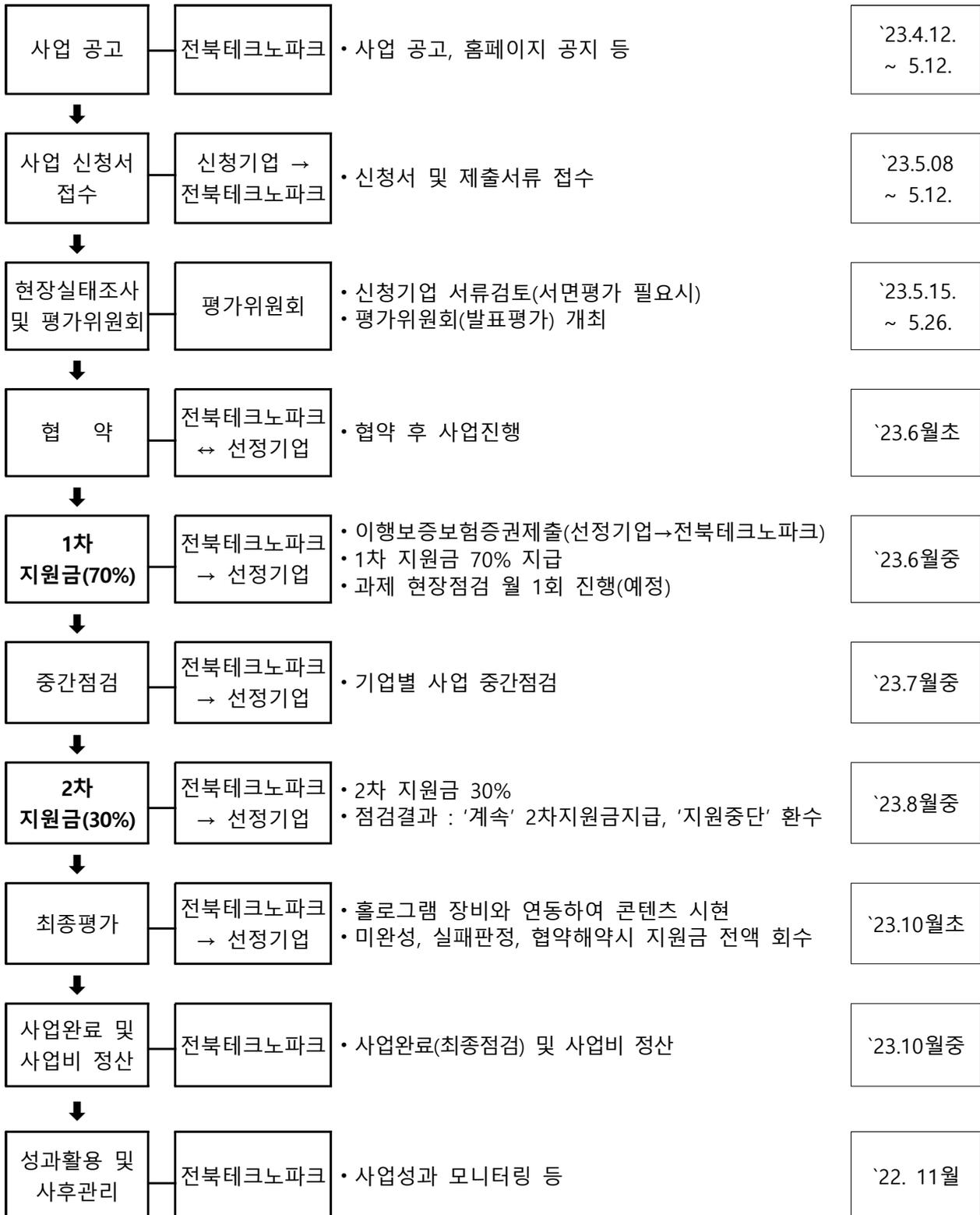
□ 지원규모 : 총 495,000천원

구분	지원규모 및 지원금	민간부담금
기업수요지원	9개 과제 (과제당 최대 55,000천원)	총사업비의 10%이상 필수 (현금10%이상, 현물90%)
※ 적정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기준 10%이상 부담 (현물90%이내, 현금 10%이상)		

□ 사업비 지원요건

구분	세부요건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되는 홀로그램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기타 참여인력의 출장비 등(자산취득 비용 지원 불가) •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개발 완료하고, 적합 장비와 연동하여 콘텐츠 시연이 가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점검 지원중단 판정, 최종평가 실패판정, 개발 미완성,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공익적 활용 및 전시회 개최시 참여 협조 <table border="1" data-bbox="363 824 1414 949"> <thead> <tr> <th data-bbox="363 824 715 875">총사업비</th> <th data-bbox="715 824 1066 875">신청 지원금 비율</th> <th data-bbox="1066 824 1414 875">민간부담금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3 875 715 949">지원금 + 자부담 = 100%</td> <td data-bbox="715 875 1066 949">총 사업비의 90% 이하</td> <td data-bbox="1066 875 1414 949">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10%이상, 현물90%)</td> </tr> </tbody> </table>			총사업비	신청 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지원금 + 자부담 =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10%이상, 현물90%)		
총사업비	신청 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지원금 + 자부담 =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10%이상, 현물90%)									
사업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불가 대상이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 (협약 전 집행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 불가)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지원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을 필수 편성해야하며, 국고보조금지침 상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의 원칙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함 (자기부담금 100% 사용 필수)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작성 가이드라이 붙임1"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30% 지급 ※중간점검 70점 미만인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기지원금 환수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항 <table border="1" data-bbox="363 1749 1414 1861"> <thead> <tr> <th data-bbox="363 1749 624 1800">구분</th> <th data-bbox="624 1749 884 1800">제출시기</th> <th data-bbox="884 1749 1144 1800">보험금액</th> <th data-bbox="1144 1749 1414 1800">보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3 1800 624 1861">이행보증보험증권</td> <td data-bbox="624 1800 884 1861">1차 지원금 신청 시</td> <td data-bbox="884 1800 1144 1861">지원금100%</td> <td data-bbox="1144 1800 1414 1861">협약기간 + 90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100%	협약기간 + 90일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100%	협약기간 + 90일								

2. 추진절차



※ 내부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선정 대면평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과제에 한하여 사전 공지 예정임.

3. 사업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4. 12(수) ~ 5. 12(금)**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rnd.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 각 홈페이지 첨부파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접수기간 : 2023. 5. 8(월) ~ 5. 12(금) 17:00까지**

- ①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 인정됨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탈락되며 접수불가사항 당일 통보예정)
- ② 접수마감일은 데이터 접속증가로 인하여 종료 1시간 전 반드시 조기 입력완료 요망

□ **신청(접수)요령**

- ①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에서 접수
- ②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 후 최종 "*****.zip" 파일명을 "**홀로그램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신청서류 - (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No.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계획서 (직인필수)	서식1	주관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참여
3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관,참여
4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
5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약약서		주관,참여
6	청렴이행각서		주관,참여
7	참여기업 자료제공 약약서		주관,참여
8	사업자등록증	-	주관,참여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22.12.31일기준, 공고일 기준 2부)	-	주관,참여
9	2022년도 재무제표	-	주관,참여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주관,참여
11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주관
12	최근 3년간 홀로그램콘텐츠 등 지원 분야 관련 실적 증명서 제출	해당시	주관,참여

* 22년도 재무제표 경우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결산확정)된 증빙자료 제출

→ (유의사항) 관련 규정 근거 최근(2022년)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 (2022년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일 경우도 포함)

[공통사항]

1. 제출서류 PDF 변환 시, 반드시 기본인쇄(1페이지 1쪽) 설정(1페이지 2쪽 변환 불허)
2. 각 항목별 서류 제출시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SW융합팀 정주영 책임연구원
T. (063)214-9803 / E. jjy@jbtp.or.kr

4.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① 서면선정평가(필요시) : 제출서류,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선정평가
- ② 현장점검(필요시)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③ 선정평가(발표평가) : 신청과제별 총괄책임자 발표(발표, 질의 30분내외)
- ④ 과제선정 : 평가결과에 의해 사업범위 및 예산 등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 (유의사항) ①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서면/선정평가 모두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1	정책부합성	○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10	25
		○ 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	
		○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5	
2	기술경쟁력	○ 사업 관련분야 기술·지식 보유 및 전문성	10	25
		○ 기술 발전 동향 및 해당 기술의 사용 가치의 적정성	5	
		○ 생산 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적정성	10	
3	사업경쟁력	○ 시장규모 등 성장 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15	40
		○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15	
		○ 해외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5	
		○ 사업 손익 전망 및 손익분기점 분석의 타당성	5	
4	사업관리	○ 일정, 산출물, 재무 등 일반 관리 분야	5	10
		○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3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2	
계			100	

5. 기타 유의사항

□ 적용 규정 : 본 사업 관련 제반 업무 절차는 아래 규정 및 지침 등 적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부속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지원제외 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 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사항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
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국가지방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
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8.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국가지방 지원사
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9.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
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10.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11.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
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12.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
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13.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
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14. 정부지원금을 받아 산출물이 동일한 과제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 신
청일 기준 기출시 또는 상용화가 완료된 콘텐츠인 경우
 15.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5.)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하“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 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고

-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요내용																						
정산위탁 수수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a0e3; color: white; padding: 5px;">정산위탁수수료 책정기준(별표1)</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0e3;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개정(인)</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2px;">산정기준 및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0e3;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개정(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th>사업비 규모</th> <th>표준수수료</th> </tr> </thead> <tbody> <tr><td>5천만원 미만</td><td>600천원</td></tr> <tr><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td>800천원</td></tr> <tr><td>1억원 이상 3억원 미만</td><td>1,000천원</td></tr> <tr><td>3억원 이상 5억원 미만</td><td>1,500천원</td></tr> <tr><td>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td><td>1,600천원</td></tr> <tr><td>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d><td>1,800천원</td></tr> <tr><td>30억원 이상</td><td>2,100천원</td></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th>참여기관수</th> <th>가산금</th> </tr> </thead> <tbody> <tr><td>1개</td><td>표준수수료의 10%</td></tr> <tr><td>2개 이상</td><td>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 가산(2개 15%, 3개 20%)</td></tr> </tbody> </table> </div> </div> </div>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30억원 이상	2,100천원	참여기관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 가산(2개 15%, 3개 20%)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30억원 이상	2,100천원																						
참여기관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 가산(2개 15%, 3개 20%)																						
편성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시설·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비용 -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산정 불가 ② 교육·세미나·문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 강사료 -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③ 행사개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장소 사용료 및 현수막 등) ④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⑤ SW구입비 																						

	<p>⑥ 위탁연구개발비</p> <p>⑦ 간접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공통운영경비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p>⑧ 기타</p> <p>교육 훈련비, 시험분석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p>
--	---